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08월 28일, 이명순 의원 발의
- 회부일자 : 2020년 09월 11일 회부
- 상정일자 : 제259회 평창군의회(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2020년 09월 1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이명순 의원)

가. 제안이유

2009년 9월 처음 제정·실시 되어온 기존 조례를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의정모니터 구성을 읍·면장추천에서 공개모집 원칙으로 변경(안 제3조)
-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명시 및 확대(안 제5조)
- 의견 제출을 서면원칙에서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제출방법 다양화(안 제6조)
- 활동 독려를 위한 우수모니터 표창규정 신설(안 제9조)
- 관계기관 및 의정모니터의 개인정보 보호규정(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이용섭)

○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 모집에 공정성을 두고, 역할을 확대 명시하여 진정한 열린 의정 구현의 목적을 살리고자 함에 조례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 조례안의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3조에서 의정모니터 구성을

기존의 읍·면장의 추천에서 공개모집의 원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에서는 의정모니터의 역할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모니터 활동 의견제출 방법을 서면원칙을 삭제하고 다양화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우수모니터 표창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 본 조례안은 의정모니터의 구성을 **공개모집으로 변경,**

“모든 주민에 공정한 기회를 준 것”에 의미가 크다 보며,

관련 전국입법례는 아래표를 참조해 주시고,

조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의정모니터 구성관련 전국의회 입법례

의정모니터 조례제정 전국의회	의정모니터의 구성 방법
단양군, 원주시, 철원군, 홍천군, 횡성군, 보령시, 서산시, 청양군	<u>읍·면장 추천 또는 의원 추천</u>
경기도, 광주광역시 북구, 동두천시, 강남구, 관악구, 금천구, 양천구, 세종특별자치시, 연수구, 인천광역시, 구리시, 충청남도, 천안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u>공개모집</u>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의결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평창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 의회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정모니터”란 평창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주민 중에서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평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주민 불편사항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위촉) ①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24명 이내로 하되, 의장은 위촉대상자가 지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는 의회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개모집으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의 지원자가 없거나 의장이 지역별·성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③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
2. 평창군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
4. 일정기간(6개월 이상)동안 의정모니터 활동을 하지 않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위촉 해제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역할) 의정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2. 군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 또는 주민 불편사항 건의
3.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
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모니터링
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6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 ① 의정모니터는 우편,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받은 의견에 대하여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관계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은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신분증의 발급)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이 의정모니터의 신분증을 발급하거나 재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의정모니터가 신분증을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활동지원) ① 의장은 의정모니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비보상) 회의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의장은 활동이 적극적이고 의견제출 실적이 우수한 의정모니터에게는 「평창군의회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